

신구조분 대비표 - 수출거래약정서

거래문서명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수출거래약정서	제 13조 매입대금상환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3조 매입대금상환</p> <p><조항신설></p> <p>⑥은행이 확인한 기한부신용장하의 하자없는 선적서류의 매입은 제 1 항과 제 2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수출자는 미결제된 채무의 회수나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상의 지급실행절차에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협조할 것이며, 법적절차에 의해 요구되는 채무입증을 위한 부가서류의 제출 및 증거물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. 만약, 개설은행이 법원의 명령서에 의해 해당 신용장하에서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거나, 수출자가 연루된 사기, 불법, 권한 없는 행동으로 기인하여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, 은행은 서면으로 수출자에게 통지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, 수출자는 회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이를 곧 갚기로 한다.</p>	수출자의 귀책이 없는 한, 은행은 자신이 확인한 신용장하에 하자없는 선적서류의 매입 시 신용장통일규칙등에 따라 개설은행의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수출자에 대한 환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.(이 경우 수출자는 거래 당사자로서 은행의 최수노력에 최대한 협조해야 함)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환대 대상에 포함됨